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여신금융기관이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인(개인 및 법인)에게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6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까지”를 “제6호까지”로 한다.

6.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외국 여신금융기관”이라 한다)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 위)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 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 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여신금융기관이 「외국환 거래법」 제3조 제1항 제15 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 인(개인 및 법인)에게 외화 로 대부하는 경우</u>
제6조의4(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) 법 제9 조의4제3항에서 “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한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의4(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</u>
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	<u>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외국 여신금융기관”이라 한다)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</u> 7. ----- 제6호까지 <u>지</u>----- ----- -----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514